

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**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**  
(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)



**행정재경위원회**  
전문위원

#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47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0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(안)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3. 설치근거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## 4.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개요

- 가. 기금사업의 목표 :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나.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 
중소기업 융자 지원대상 확대 및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차액 보전금 지원, 융자대상자 선정 내실화,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등

## 5.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

### 가.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| 기 금 명              | 2022년도 말 조성액 <sup>㉠</sup> | 2023년도 조성계획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3년도 말 조성액 <sup>㉡</sup><br>$e = d + a$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입 <sup>㉢</sup> | 지출 <sup>㉣</sup> | 증감 <sup>㉤</sup><br>$d = b - c$ |  |    |
| 중 소 기 업<br>육 성 기 금 | 6,252,730                 | 3,824,091       | 5,040,000       | △1,215,909                     | 5,036,8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
### 나.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| 기 금 명              | 2023년도 말 조성액 <sup>㉠</sup> | 용자금 미회수 채권 <sup>㉢</sup> |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<sup>㉣</sup> | 총 조성규모 <sup>㉤</sup><br>$d = a + b - c$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중 소 기 업<br>육 성 기 금 | 5,036,821                 | 10,204,743 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          | 15,241,5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다. 자금 운용 계획

#### ○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| 항 목          | 수입액       | 전년도 수입액   | 증 감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계            | 3,824,091 | 3,952,803 | △128,712 |
| 용자금 회수(이자포함) | 3,726,549 | 3,877,492 | △150,943 |
| 이자수입         | 97,542    | 75,311    | 22,231   |

#### ○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| 항 목         | 지출액       | 전년도 지출액   | 증 감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계           | 5,040,000 | 5,541,000 | △501,000 |
| 심의위원회 수당    | 1,000     | 1,000     | 0        |
| 시중은행협력 이차보전 | 39,000    | 40,000    | △1,000   |
| 민간용자금       | 5,000,000 | 5,500,000 | △500,000 |

## 6. 검토의견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구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995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, 재원은 전입금, 이월금, 정기 상환금 및 이자 등으로 조성됨.
-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
수입내역은  
공공예금 이자수입 97,542천원,  
융자금회수 이자수입 66,089천원  
민간융자금 회수 3,660,460천원  
총 3,824,091천원이며,  
지출내역은  
위원회 참석수당 1,000천원  
시중은행협력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39,000천원  
민간융자금 5,000,000천원  
총 5,040,000천원임.
- 본 기금은 중소기업체의 안정적 경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2023년도 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련법령 1부. 끝.

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**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**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

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01.13]

(일부개정) 2021.12.31 조례 제1223호

**제3조(기금의 설치)**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중소기업의 육성·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 
<개정 2011.10.27, 2020.12.31>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

**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**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>

[본조신설 2016.7.18.]

**제4조(기금의 재원)**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금천구"라 한다)의 일반회계 전입금 <개정 2016.7.18, 2020.12.31>
2.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상환 원리금 중 금천구 이체 기금 <개정 2020.12.31>

3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4.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 <신설 2016.7.18.>

5. 그 밖의 수익금 [중전 제4호에서 이동 <2016.7.18.>]

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6.7.18>

**제5조(기금의 용도)**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.

1.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중소기업운전자금 <개정 2020.12.31>

2. 금융기관의 협력 자금 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<신설 2011.10.27>

3.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<신설 2016.7.18.> <개정 2020.12.31>

4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[중전 제3호에서 이동 <2016.7.18.>]

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6.7.18.>